



산지이용, 입목벌채 허가 완화

산림청에서는 보전산지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완화하고, 산지전용허가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키로 하는 등 산지이용 규제를 완화했다. 또한 산지이용동 제고와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려는 내용의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7월 16일 국무회의 의결에서 통과시켜 실용화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첫째,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30ha 이상의 대규모 산지를 개발하는 경우 시·군·구의 보전산지 비율을 최대 59%까지 편입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보전산지 편입비율을 '사업계획부지의 50% 이내' (시·군·구의 보전산지 면적 비율에 따라 최대 75%)로 제한해 왔으나, 앞으로는 해당 시·군·구의 보전 산지 면적 비율을 97%까지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산이 많아 지역개발 사업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온 지역의 각종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사업의 성격상 불가피하게 산지전용제한지역이 편입되거나 사회적·경제적·지역발전 등 여건변화로 산지전용제한지역의 해제가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에 따라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여진다.

셋째, 도시민의 농산촌휴양 수요를 충족시키고 농산촌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보전산지 안에서의 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의 시설허용 면적을 현행 1ha에서 3ha로 확대했으며, 야회 방송 촬영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산지구분의 기준은 ▲보전산지(492만ha, 77%)는 임업생산 및 공익기능증진을 위하여 개발이 제한되는 산지 ▲준보전산지(137만ha, 23%)는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로 구분한다.

넷째, 개발 수요가 많은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면적에 관계없이 시·도지사의 산지전용 허가만으로도 산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토석채취의 경우 시장·군수는 10ha 미만, 시·도지사는 10~20ha 미만으로 허가면적을 확대했다.

현재는 200ha 이하의 산지전용허가는 시·도지사, 200ha 이상은 산림청 권한이며, 토석채취의 경우 시장·군수는 7ha 미만, 시·도지사는 10ha이다.

한편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7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산지이용, 입목벌채 허가완화

이에따라 새로 바뀐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을 보면 산지개발시 적용되는 연접개발 제한이 대폭 완화되어 연접제한시 적용되던 면적합산 거리 기준을 현행 500미터에서 250미터로 축소됐다. 그리고 공장의 증·개축, 660평방미터 이내의 실거주자 주택신축,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해서는 연접개발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함께 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접개발 제한규정을 조례로 정하는 등 현지 여건에 맞는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연접개발 제한은 산지의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산지전용 허가예정지와 종전의 산지전용지가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 허가예정지와 기존 전용지의 합산 면적이 3ha를 초과하지 못한다. 3ha 이상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개발 가능을 말한다.

산림청은 산지이용 규제완화로인한 무분별한 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연친화적인 산지개발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전용산림의 사후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산림청 남성현 산림이용국장은 “앞으로 전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림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인 산지분야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한편 자연친화적인 산림이용이 가능하도록 산지개발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산림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산지전용 허가 기준

산지관리법 제18조 제1항

- ① 산지전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 안에서 행위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 ② 인근 산림의 경영·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 ③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 ④ 희귀야생동·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계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
- ⑤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 ⑥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
- ⑦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 ⑧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산지전용 허가기준 적용 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산림청고시)>

-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임도가 단절되지 아니할 것
-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안에 보호수, 수형목이 생육하지 아니할 것
-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35도 이하일 것
- 입목축적이 시·군의 평균 입목축적의 150% 이하일 것
-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표고가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보전산지 안에서 허용되는 시설

구분	허용시설
공통 (임업용 /공익용)	국방·군사시설
	사방시설 등 국토보전시설
	도로·철도 등 고용·공공용시설
	산림보호·산림지원의 보전 및 증식 시설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복원·보수·이전 및 보존관리 시설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위한 시설
	광물의 탐사·시추시설 광해방지사업 시설
임업용 산지	산촌산업개발시설(임산물 공동저장·판매·가공·이용시설), 산촌휴양시설(임업체험시설·산림문화회관) 임도·산림경영관리사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수목원·자연휴양림·산림용장·정망대·자연관찰원·산림전시관·목공예실·숲속교실·숲속수련장·산림박물관·산림교육자료관·산책로·탐방로·등산로 등 산림공익시설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부대시설
	농림어업용 생산·이용·가공시설, 농어촌 휴양시설
	지하자원의 탐사·시추 및 개발시설
	전기통신설비 등 공용·공공용시설
	묘지· 화장장·납골시설
	종교시설
	병원·청소년수련시설 등 공익시설
	교육·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
가축 방목, 산채·야생화·관상수 재배, 물건 적치, 농로, 임시 야외촬영시설	
공익용 산지	임도·산림경영관리사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수목원·자연휴양림 등 산림공익시설
	지하자원 탐사·시추 및 개발시설
	교육·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종교시설 증축 또는 개축, 사찰림 안에서의 사찰의 신축
	폐기물처리시설 등 공용·공공용시설 산채·야생화·관상수의 재배, 농로의 설치 등